

새로운 허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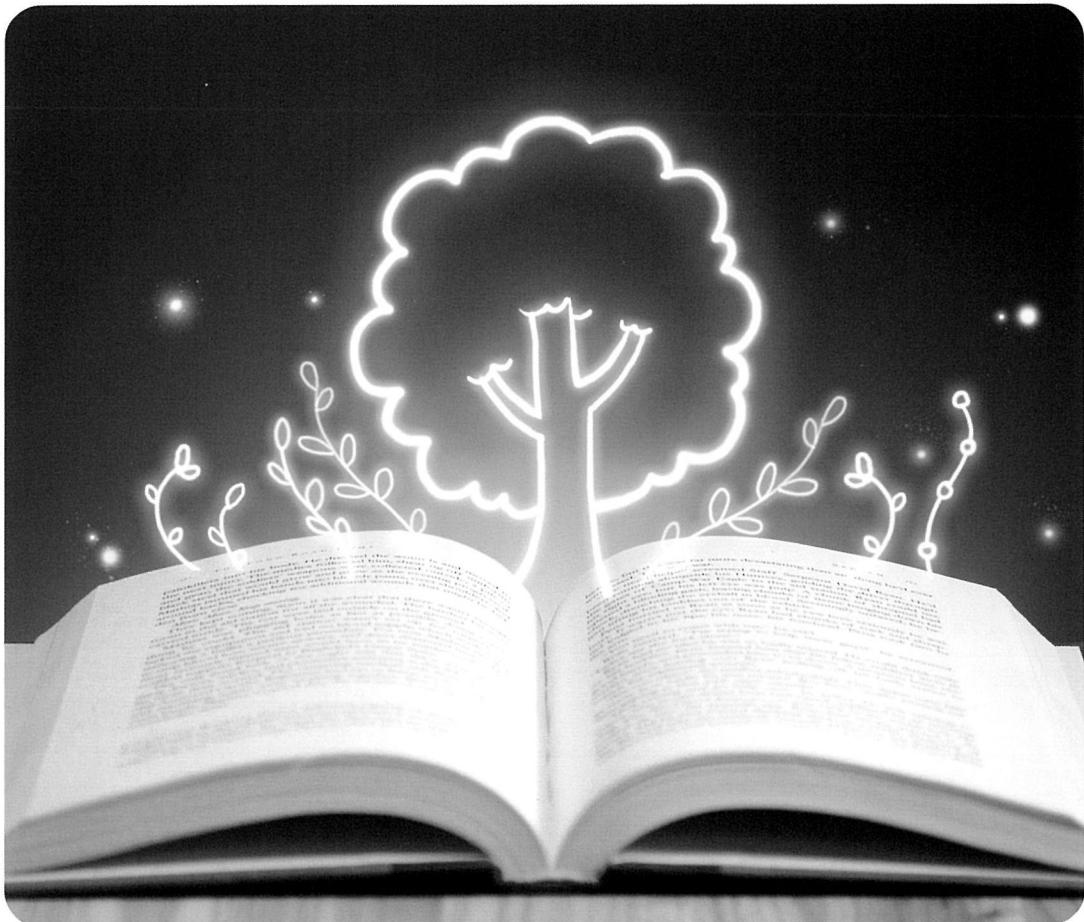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윤 섭 | 환경부 환경정책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IOWA 주립대 환경공학과 석사 졸업
환경부 수도관리과장, 유해물질과장, 전략총괄과장, 지원순환국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 역임
tel. 044-201-6630 | ys8265@naver.com





환경부는

인체와 생태계에 특히 위해가 강한 물질들을 특정 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민감한 지역에는 이런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379개 공장을 조사한 결과 26.4%인 100개소는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폐놀, 구리,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30개 공장을 대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50%인 15개소가 낮은 수준 이기는 하지만 납, 크롬, 포름알데히드 등의 특정물질을 무단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허가 이후에 생산 공정과 원료가 바뀌면서 생산자도 허가자도 모르는 사이에 배출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까지는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대에 뒤떨어진 현재의 배출시설 허가제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의 허가제도는 1971년 공해방지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환경보전법과 매체별 관리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허가제도에서는 생산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하면 그 효력이 영구히 지속되므로 생산자는 생산 공정이나 원료의 변경 등에 따른 시설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특히,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허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던 기술감리단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고, 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한 이후에는 허가 절차가 거의 신고처럼 변이되어 허가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기 위해 최대 5개 법령에 따른 8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그에 따른 불편도 적지 않다. 국내 H 기업의 경우 최근 공장을 증설하면서 약 50건에 달하는 환경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하니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을까 짐작이 간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독일, 영국, EU는 생산 공정 전반과 처리기술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서 경제적·기술적·환경적으로 가장 적합한 최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가·주민·정부가 함께 수질·대기·토양·소음 등 모든 오염매체들로 인한 위해 유무를 검토한 이후, 공장별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배출허가 기준을 따로 정하여 통합 허가를 하고 있다. 허가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생산 공정이나 배출물질의 변경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매체별 통합허가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하천 방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지기술 또는 그 기술의 조합으로 구성된 최상가용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적용하도록 하며, 허가사항을 5년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허가 제도를 통해 생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계의 환경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이런 토대 위에 개도국들과의 환경 기술 격차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은 국제 무대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국제 환경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과 EU는 FTA를 체결하면서 무역을 위한 환경보호수준의 저하 방지, 국제 환경협약 의무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에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 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과 같은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동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선진국들은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스톡홀름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주도하면서, 이들을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신흥 개도국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로 수출 주도형의 경제에 먹구름이 끼지 않도록 하려면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허가제 도입되면 최상가용기술의 적용에 따라 국민과 자연 생태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약 13,000개의 일자리와 7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나라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새로운 환경 제도는 언제나 안전을 우선시 하는 국민·시민단체와 도입되는 제도의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새로운 허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막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르면 이해 당사자 간에 친반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한 발씩 양보하여 통합 허가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도입·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